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311733 임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피고 및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1나10871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발사하고 달 궤도에 진입시켜 구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피고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당초에 정한 총 연구개발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피고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 점검을 받은 후 다음 연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년 체결된 3차년도 표준협약에서 총 연구개발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협약을 기초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도별 협약이 체결되었고, 각 협약상 연구개발비에는 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이 계상되었다. 원

고들(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 제외)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소외인(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서, 피고가 정한 '구 연구수당 지급기준'(2013. 1. 10. 개정 지침 제146호, 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 1차년도(2016년)분부터 3차년도(2018년)분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급여규정, 성과급지급기준 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연구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지급기준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수탁연구사업 등에서 정한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향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제1조). 연구수당은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제2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수탁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내·외부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제3조). 연구수당은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며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기여도, 연구개발의 수준 및 독창성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제4조, 제5조 제1항).

마.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하여 내부 점검을 요구하였고, 2019년 1월경부터는 외부 점검평가단이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 가능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19년 협약 체결을 위해 제출하였던 2019년 시행계획의 검토 및 2019년 협약의 체결 절차는

모두 보류되었다. 2019년 5월경 외부 점검평가단의 중간점검 결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된 후 피고는 2019년 6월경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대대적인 사업점검으로 사실상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연구수당(이하 '이 사건 연구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한 2019년 6월부터 7개월분의 연구수당만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한다는 내용의 2019년 시행계획을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2019. 7. 3.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상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연구수당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규 또는 피고의 노동관행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 또는 그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

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등 참조).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1)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 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는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정하고, 그 계상기준에 관하여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라고 정하였다.

2)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3]에서는, '연구수당'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이라고 정하였다.

3)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구수당을 환수・회수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제1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8호) 등에 해당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

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제19조 [별표 2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등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한다. 또한 처리규정 제30조 [별표 8]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에 해당하여 회수한다.

다) 또한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급여규정과 별개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이 사건 지급기준을 두었는데, 여기에서는 연구수당을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과제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수당의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을 이 사건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연구수당에 관하여 정한 바 없으며,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도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나) 관련 법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함에 있어 비목별·세목별로 연구개발비를 산정, 집행하는 계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련 법령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수당을 포함한 모든 세목을 반드시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계상해야 한다거나 이를 지급받아 그 사업의 참여연구원 등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연구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관련 법령상 상한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20퍼센트 상당액이 연구수당으로 계상·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거나 인건비의 20퍼센트 미만으로 계상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연구수당이 계상된 범위에서만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참여연구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 협약에 이 사건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도 어렵다.

가) 관련 법령과 피고 취업규칙,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는 연구수당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보아 인건비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수당을 급여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부당집행 금액으로 보아 회수 대상으로 삼고 있기까지 하다.

나)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연구수당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당 과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사업 참여 연구원들로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 예산 계상 여부'라는 사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사용 용도와 액수가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검증 및 정산 절차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 참여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연구 성과, 연구개발비 집행상 법령 준수 여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필요 등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조차 환수·회수할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 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규칙의 해석과 노동관행, 표준협약의 효력, 연구수당의 발생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4. 7. 25.「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2024. 1. 26. 법률 제20144호) 제3조에 따라 피고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칙 제8조에 따라 피고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